

I.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현황

1. 농촌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3.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5.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I. 농촌지도사업 관련법령(발췌)

1. 농촌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가. 농촌진흥법

[시행 2010.1.25] [법률 제9957호, 2010.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위생, 잠업, 벼의 육종·재배, 농·축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과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씨,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 농기계·농약·비료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 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공단체외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7.7.13>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제5조(공동연구개발)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대학교수·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관계대학·관계전문가 및 농업인등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1999.2.5, 2007.12.21>

1. 농업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기초농산물·수출유망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농업유전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4. 선도기술의 개발
5. 첨단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농업인력의 양성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책등의 건의)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지원시책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책등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시책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등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지도직 공무원) 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지도공무원의 자격등) 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학술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②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수당·위촉방법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지도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활용 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⑤ 실용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 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 ⑩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 [본조신설 2009.3.5]

제14조의3(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실용화재단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5]

제15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농촌진흥기관이 농과계 학교·농업단체·연구기관·기업·농업인과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9957호, 2010. 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화재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실용화재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의 정년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에 대하여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3.26] [대통령령 제22096호, 2010.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09.8.25>

제2조(작물의 종류)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1.8>

1. 자생식물중 형질의 개량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한 작물
2.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작물

제3조 삭제 <2008.1.8>

제4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심의·조정에 앞서 동 업무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조정업무를 행한다.

제5조(공동연구대상사업)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기술의 개발
2. 수출지향전략작목의 개발
3. 첨단기초농업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
4. 농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
6. 국내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7.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대상자가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및 농업인단체(이하 "공동연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개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 책임자
2.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 출연금집행 실적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7조(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시험연구기간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농업과학기술개발계획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4.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소속 시험 연구기관간의 협력방안
5.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과학기술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기본계획)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3. 교육훈련의 구분 및 교육방법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훈련기관) 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8, 2009.8.25>

1. 농촌진흥청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

3. 지방자치단체소속 교육훈련기관

4.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훈련시설기준은 교육훈련과정 및 대상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교육훈련기관중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교재의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강사의 지원
5. 교육훈련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1조(명예직연구관의 자격) ①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재임중의 연구실적이 현저하고 재직시의 직위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 한다.
<개정 200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직명은 "명예직연구관"으로 한다.

제12조(위촉기간 및 수당등) ①명예직연구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명예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①농촌진흥청장은 명예직연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기간중 담당연구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4조(복무) ①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연구관이었던 자는 재직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명예직연구관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시험연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내역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되, 기성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 또는 기성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4. 직제·규약 또는 정관(학교·단체에 한한다)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보조금의 지급등) ①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결정된 보조금은 매분기별로 분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보조할 사업 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비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그 공동연구 개발성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육성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술사용료의 산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21조(보상금의 지급) ①농촌진흥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특허청장과의 협의) 농촌진흥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법 제1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분석·평가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종묘의 증식 사업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3(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4(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 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용화재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5(실용화재단에 출연 및 지원) 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실용화재단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6(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4조의2제8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실용화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부칙 <제22096호, 2010. 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1996.3.20] [농림부령 제1226호, 1996.3.2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대상사업결과의 활용방안
4. 기타 공동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출연금의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협약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교부신청) 영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 (사용계약의 신청)영 제17조 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계획의 개요
 - 나. 사업계획의 내용
 - (1)시설규모(생산능력을 기재할 것)
 - (2)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할 것)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17조 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제7조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의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8조 (기술사용료 산정방법)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제9조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상황의 보고)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6호,1996.3.20>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영농기술훈련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촌진흥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재지
2. 사업명
3. 사업장소
4. 사업기간
5. 사업비예산액
6. 보조금교부신청액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촌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용계약신청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기 업 체 명		
⑤연 구 성 과 의 명 칭			
사용 범위	⑥사 용 기 간		
	⑦사 용 지 역		
	⑧사 용 내 용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농촌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당해 연구성과의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사용료 견적서 1부 3.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2007.12.21 법률 제875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 [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5조 (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사용한 자

부칙 <제875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 2009.10.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산·학·관·연합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7.18, 1979.8.27, 1994.5.16, 1995.9.28, 2007.6.11>

제1조의2 (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24, 2007.6.11>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본조신설 1995.9.28]

제2조 (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시·군에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2.1, 1994.5.16, 1995.9.28, 2007.6.11, 2008.10.20>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 (도심의회의 구성) ①도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9.8.27>

② 도심의회회의 위원장은 당해 도농업기술원장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와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국·공립 농과계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심의회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6.11>

1. 도·도교육위원회 및 도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도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인 이내

③ 제2항제3호·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5.16, 1995.9.28, 2007.6.11>

제6조 (도심의회회의 기능) 도심의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7.6.11]

제6조의2 (시·군심의회회의 구성) ① 시·군심의회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군심의회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6.1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인이내)
 -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 다. 시·군의 농업관련업무담당과장 및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산림조합장 각 1인
4. 제3호외의 농업단체대표 7인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

③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 신설 1995.9.28]

제6조의3 (시·군심의회의 기능) ①시·군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6.11, 2008.6.20, 2009.10.8>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7.6.11>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시·군심의회의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심의회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의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1>[본조신설 1995.9.28]

제7조 (위원장등) ①각급심의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의를 대표하며 심의회의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각급심의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1994.5.16>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각급 심의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人以下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4.5.16>

제10조 (회의록) ①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 ①각급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①각급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9.28>

③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79.8.27>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 의 의견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9.28>

부칙 <제5889호,1971.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농사연구지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421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2호,1974.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9호,1978.11.27>(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9호,1979.2.24>(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제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농업산학협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③생략

부칙 <제9576호,197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0호,198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2.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1> 생략

<122>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23> 내지 <148> 생략

부칙 <제14260호,1994.5.1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한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 위원으로 보되,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부칙 <제14773호,1995.9.2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원정수의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초과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과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52호,1996.3.20>(농촌진흥법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및 ③ 생략
-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6757호,2000.3.24>(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 ⑥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⑦내지 <18>생략
- 제6조 생략

부칙 <제17115호,2001.1.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23>내지 <152>생략

부칙 <제19513호,2006.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9>내지 <241>생략

부칙 <제20085호,2007.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5호,2008.2.29>(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농수산부·과학기술처"를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 <제20854호, 2008.6.20>(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087호,2008.10.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 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 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774호, 2009.10.8>(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1] [법률 제9347호, 2009. 1.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2008.2.29>

제2장 보조금예산의 편성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내역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적용 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보조금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①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③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15조 삭제 <2009.1.30>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한다)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20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내역을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 외 사용의 금지 <개정 2009.1.30>) 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도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제33조 (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검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이의신청)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2006.10.4>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9347호, 2009. 1.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30] [대통령령 제21450호, 2009. 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2009.4.30>

제2조 (금부금의 지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금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1.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9.5.24, 2008.2.29>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

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2.28>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 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만원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한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그 보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당초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1의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4.30]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제21450호, 2009. 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가. 회계변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개발계정(시도자율편성)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농특에서 이관)
-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 :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자원활용기술보급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시도자율편성),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국가직접편성), 자원활용기술보급(국가직접편성)

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대상 확인

- 보조사업대상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환급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구 분	대 상	품목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38(동력경운기, 콤파인 등)
	축산업용 기자재	53(육추기, 착유기 등)
	임업용 기자재	15(목제파쇄기, 임업용 원치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3(키토산, 목초액 등)
	어업용 기자재	37(어망, 부자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28(농업용 필름, 파이프 등)
	어업용 기자재	18(양어장용 필름, 어상자 등)

□ 환급방법

- 보조사업자가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 말의 다음날 25일까지 농협 등에 신청

□ 환급대상 사업비 공제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사업비 정산시 환급액을 공제함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다. 민간(자본,경상)보조금 정산 절차 및 방법 개선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 산학협동심의회 또는 농정심의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신규통장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 사업추진진도에 따른 현장 집행 점검을 실시

□ 집행 및 정산절차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부서 등과 협의 후 집행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잔액반납)
- 보조금교부결정통지를 할때 반드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
-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자와 동행하여 반드시 현장을 확인함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토록 함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 환급적용대상 농업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공제
- 이자발생분에 대해 정산시 세출과목으로 반납하고, 해당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시 집행잔액으로 반납

□ 보조금 교부조건(안)

보조금 교부조건(안)

- 민간(자본, 경상)보조금 사업-

1. 보조금관련 통장을 신규로 개설한다.

- 여러 건일 경우도 사업별로 따로 개설함
- 부기명은 보조사업자명으로 개설

2. 신규통장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카드로 사용한다.

- 불가피한 사유 : 산간오지, 벽지, 섬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또는 현지에서 사용카드가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등

3. 보조금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부담금을 입금한다.

- 자부담 부담여부(계좌확인)를 확인 후 보조금을 입금함

4. 보조금사업 집행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과 계약대행을 000시(군)에 의뢰할 수 있다.

5. 정산시 유의사항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무통장입금시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징구)분만 인정

다. 소액 인건비, 공공요금 등은 무통장 입금처리하고 증빙서 첨부

라. 이자발생 분은 반드시 세출과목으로 반납

마. 농업용기자재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대상을 확인하고 사업비에서 공제

바. 정산서에 보조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 종결("0"원 처리)

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 명시

* 000시설 처분제한 기준 5~10년, 000장비 처분제한기준 3~5년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기계·장비 관리

- 조달청 고시 제2009-37호의 “내용연수”를 준수하여 자체 사후관리기간 설정
- 시군농업기술센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자체 관리대장을 비치 작성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 처분제한기준을 설정하고,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제한
 - “내용연수”이내에는 양도, 교환, 대여, 용도변경, 폐기를 할 수 없음(법 제35조)

마. 자체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액 사용

□ 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매칭사업의 경우 국비, 지방비 비율을 적용하여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유사사업 사용 또는 국고보조금 정산시 국비 비율만큼의 해당액 반납

□ 예산절감액 사용

-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법 제31조 4항)
- 반환하지 아니한 집행 잔액(초과액)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를 집행 잔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2009. 5. 1. 시행)